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63
----------	-------

발의연월일 : 2025. 11. 26.

발 의 자 : 이용우 · 정준호 · 김우영
박 정 · 최혁진 · 박해철
복기왕 · 김태선 · 김남희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패션 산업의 대량 생산·대량 폐기 구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의류 재고품(미판매 의류)이 급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6만 6,000톤이었던 의류 폐기물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 11만톤까지 약 2배 증가했고, 2023년 기준 11만 3,000톤이 발생하는 등 폐의류의 다량 발생이 문제가 되는 상황임.

합성섬유 중심의 의류는 생산·유통·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미세플라스틱 발생, 폐수 및 유해 화학물질 배출 등 환경적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류 재고품의 발생 실태 파악, 순환이용 촉진, 소각·폐기 현황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에 따라 재고 감축 정책의 설계·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사용·재활용 등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한

계가 있음.

반면 유럽연합(EU)은 2025년 9월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의 개정안을 채택하여 의류 재고품의 폐기 제한·금지, 재고 관리 의무, 정보 공개 등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의류·신발·침구류 등 광범위한 섬유 제품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폐의류 증가 대응 및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자 책무 조항에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폐기 원칙을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류 재고품 실태조사 및 관련 지침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수입·유통사업자에게 의류 재고품의 발생·처리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감축과 순환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1항제1호 신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사업자는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고품의 소각 등 폐기를 할 수 있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류 재고품(미판매 의류)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가 발생시키는 재고 의류에 대하여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의류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는 재고 의류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고 의류의 품목별·수량별 발생 현황
 - 2. 재사용·기증·재활용 등 순환이용 처리 실적

3. 폐기 처분 현황

4. 재고 의류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계획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류 재고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⑤ (생략) <u><신설></u>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사업자는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고품의 소각 등 폐기를 할 수 있다.</u>
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생략) <u><신설></u>	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u>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류 재고품(미판매 의류)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u>
<u><신설></u>	<u>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가 발생시키는 재고 의류에 대하여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u>
<u><신설></u>	<u>④ 의류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u>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 4. (생략) ②·③ (생략)	<u>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는 재고 의류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재고 의류의 품목별·수량별 발생 현황</u> <u>2. 재사용·기증·재활용 등 순환이용 처리 실적</u> <u>3. 폐기 처분 현황</u> <u>4. 재고 의류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계획</u> 제52조(과태료) ① ----- ----- ----- ----. <u>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류 재고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u> <u>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u> ②·③ (현행과 같음)
---	--